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701-2022-008555



[집합건물]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27-2외 1필지 대명헤리티지 제12층 제1203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	2022년6월10일	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27-2, 1128 대명헤리티지 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역2길 104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8층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1층 198.05㎡ 1층 281.11㎡ 2층 607.38㎡ 3층 607.38㎡ 4층 607.38㎡ 5층 607.38㎡ 6층 337.67㎡ 7층 337.67㎡ 8층 313.52㎡ 9층 313.52㎡ 10층 313.52㎡ 11층 313.52㎡ 12층 313.52㎡ 13층 313.52㎡ 14층 313.52㎡ 15층 313.52㎡ 16층 313.52㎡ 17층 313.52㎡ 18층 148.76㎡	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27-2 2.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28		대 대	333.6㎡ 441.7㎡	2022년6월10일 등기

[집합건물]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27-2외 1필지 대명헤리티지 제12층 제1203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22년6월10일	제12층 제1203호	철근콘크리트구조 84.48㎡	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, 2 소유권대지권		775.3분의 19.6247	2022년6월2일 대지권 2022년6월10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2	소유권이전	2022년6월10일 제67468호	2022년6월10일 신탁	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110111-2003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)
	신탁			신탁원부 제2022-7541호
2-1	신탁주의사항			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, 수익자,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5년9월1일 부기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
기록사항 없음	

-- 이 하 여 백 --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701-2022-008555

[집합건물]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27-2외 1필지 대명헤리티지 제12층 제1203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(수탁자)	110111-2003236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2-1	약정/금지사항/환매특약		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, 수익자,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5년9월1일 부기	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 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‘확인불가’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